의안번호	2216540
의 뢰 인	김소희의원
회 답 일	2026.6.9.
추계번호	26B0752

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(일부추계)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지표를 개발·보급하고, 기후위기 적응성과·진척도를 점검·평가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8억(연평균 1억 6,000만원)으로 추계됨

○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·진척도 평가 (안 제13조)	400	—	200	—	200	800	160

주: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, 향후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 및 기후위기 적응성과·진척도의 점검 및 평가의 방법,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(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・분석 등)	정부는 「기후・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과학적 방법론 및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・분석하여야 한다.(제1항) 1. 부문별・지역별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2. 취약기관이 보유・관리하는 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 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4. 그 밖에 적응 정책・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		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등 취약실태 조사・분석 방법, 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	

		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2항)	
2	안 제9조(기후위험 평가)	정부는 제8조의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・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부문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		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후위험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, 종합평가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8항)	
3	안 제10조(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・운영)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. (제1항) 1.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의 정의, 조사의 방법・기준 및 자료의 처리・활용 방법 등 적응정보의 표준설정 및 관리 2.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 수집・분석 및 생산・관리를 위한 교육 3.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・분석 및 관련 방법론 개발 4. 제9조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및 관련 방법론 개발 5.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・운영 6. 그 밖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・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	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・운영을 위해 국가기후위기정보관리센터(이하 “정보관리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(제2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・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3항)	의무규정
4	안 제11조(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)	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, 지방자치단체, 취약기관, 산업계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(제1항)	의무규정
	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의 원활한 공개 및 공동활용을 위해 적응정보 생산 표준체계를 설정・관리할 수 있다.(제2항)	재량규정
	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・운영을 통해 적응정보의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.(제3항)	의무규정
		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정보 공개와 공동활용, 생산표준 설정・관리 및 기후위기	

		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・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5항)	
5	안 제12조 (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)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・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		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지도의 작성 방법, 기준 및 내용,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2항)	
		정부는 시・도지사, 시・군・구청장,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・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인프라, 산업단지, 지역의 국가 기후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(제3항)	
6	안 제13조 (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・진척도 평가)	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 향상 및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각 분야별 개별지표와 상호비교가 가능한 포괄지표 등 기후위기 적응지표(이하 “적응지표”라 한다)를 고려하여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		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적응지표에 따라 2년마다 기후위기 적응성과・진척도(이하 “적응성과・진척도”라 한다)를 점검・평가하고 부문별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(제2항)	
		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응지표의 개발・보급 및 적응성과・진척도 점검・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5항)	
7	안 제15조 (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)	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관할 지역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이상기후・극한기후 등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 및 피해,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		정부 또는 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(제2항)	
		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(제3항)	재량규정
		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5항)	의무규정

8	안 제16조(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)	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기후위기 취약지역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・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(이하 “취약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		정부는 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(제3항)	
		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약지원 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4항)	의무규정
9	안 제17조(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의 구성・운영)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・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0조제1항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효율적 수립・시행, 같은법 제38조제1항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의 연계성 제고 등 광역적인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필요한 협의를 위하여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(이하 “광역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・운영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		광역협의회는 시・도 및 시・군・구 행정기관, 지역의 탄소중립 지원센터, 지역 연구기관, 취약기관, 사업자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.(제2항)	
		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광역협의회의 구성・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(제4항)	의무규정
10	안 제18조(기후보험)	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11	안 제19조(기후보험의 운영)	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・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		정부는 기후보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 및 보험의 운영・관리 등의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(제2항)	재량규정
		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보험의 종류, 대상, 가입 방식,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3항)	의무규정
12	안 제20조(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	정부는 기후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・관리할 수 있도록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(이하 “기후	의무규정

		보험 종합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.(제1항)	
13	안 제21조(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)	정부는 기후위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시ㆍ공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산과 활동에 미치는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 등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.	재량규정
14	안 제22조(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)	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15	안 제23조(기후영향ㆍ취약성ㆍ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등)	정부는 기후영향ㆍ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, 기후회복력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(제1항) 1. 기후위기 취약실태, 기후위험 및 사회적·경제적 파급효과 조사·분석 2. 기후영향ㆍ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방법론 및 평가 도구 개발 3. 적응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관련 표준 개발 4. 그 밖에 기후영향ㆍ취약성ㆍ위험 평가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의무규정
	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개발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며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(제2항)	
16	안 제24조(전문인력의 양성)	정부는 기후영향ㆍ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등 적응역량 및 기후회복력 증진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		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(제2항)	재량구정
		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4항)	의무규정
17	안 제26조(재정지원 등)	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학술조사ㆍ연구ㆍ기술 개발ㆍ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, 그 밖에 재정ㆍ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(제2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8조(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・분석 등)	×	·미첨부 3호 – 정부가 주기적으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·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,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등 취약실태 조사·분석 방법, 주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2	안 제9조(기후위험 평가)	×	·미첨부 3호 – 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부문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종합한 기후위험 종합평가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할 경우,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의 기후변화 평가 관련 업무의 범위·대상 및 방법 등의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기후위험 평가 및 보고서 작성의 구체적인 방법·범위·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–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은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·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5년마다 「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」를 발간하고 있으며, 해당 보고서 발간 예산은 2025년 기준 5,000만원임.
3	안 제10조(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 구축・운영)	×	·미첨부 3호 – 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적응정보의 표준 설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기후위기정보관리센터를 지정할 경우 관련 위탁사업비 및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향후 추진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범위 및 조직 규모 등 비용추계에 필요한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4	안 제11조(기후위기 적응 정보의 공개와 활용)	–	·미대상 – 기후에너지환경부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7조제2항 및 제3항[1]에 따라 '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'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·운영하고 있으며, 동 사업의 2026년 기준 예산은 56억 2,000만원임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5	안 제12조 (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)	×	·미첨부 3호(제1항 관련) –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·분석에 따른 조사·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, 현시점에서는 조사·평가 결과가 작성되지 않았고, 기후위험지도의 작성 방법, 기준 및 내용,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			·미첨부 3호 (제3항 관련) –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·분석에 따른 조사·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인프라, 산업단지, 지역의 국가 기후위기 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, 현시점에서는 조사·평가 결과가 작성되지 않았고, 각 지자체별 구체적 기후위기 저감사업의 예측이 불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6	안 제13조 (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·진척도 평가)	○	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7	안 제15조 (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)	×	·미첨부 3호 – 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이상기후·극한기후 등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 및 피해,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정부는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.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발생여부 및 규모는 실태조사의 범위와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대상이 광범위한 반면에, 실태조사의 범위, 시기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–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시범조사 및 조사 확대실시를 추진 중(수행기관:한국환경연구원)으로, 2025년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2026년에는 실태조사 전국 단위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 및 결과 분석 등에 예산 3억 5,000만원을 편성함
8	안 제16조(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)	×	·미첨부 3호 – 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기후위기 취약지역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중점적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			으로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정부가 취약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수립될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동 대책에 따라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내용·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 - 참고로, 기후에너지환경부는 '기후위기 취약계층·지역 지원 사업'을 통해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적응인프라 구축을 지원 중이며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113억 2,700만원임
9	안 제18조(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의 구성·운영)	×	·미첨부 3호 - 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시·도 및 시·군·구 행정기관, 지역의 탄소중립 지원센터, 지역 연구기관, 취약기관, 사업자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광역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경우, 협의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광역협의회의의 규모 및 구성·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-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'국가기후위기적응연구협의체 구축·운영' 사업을 통해 정보표준화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·포럼·워크숍 및 공동논문집 발간 등을 수행하는 적응정보 생산기관(10기관)간 협의체를 구성·운영 중이며('22.9.6~),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7,000만원임
10	안 제19조(기후보험)	×	·미첨부 3호 - 제정안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, 기후보험 운영 계획의 수립·시행 및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. 다만,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와 그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으며,현시점에서 기후보험의 종류, 가입대상과 보장범위, 보험료의 산정, 정부의 보험료 지원 여부 및 지원률·지원액 등 기후보험의 설계와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고,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성·기능 등에 대해서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-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2025년에 기후보험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1	안 제19조(기후보험의 운영)		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고,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였으며, 2026년에는 기후보험 체계 기반 마련 및 시범사업 연구를 위한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음
12	안 제20조(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		
13	안 제21조(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)	×	·미첨부 3호 –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자산과 활동에 미치는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 등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지원의 대상·범위·방법 및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14	안 제22조(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)	×	·미첨부 3호 – 제정안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보급・활용되기 위한 조치를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15	안 제23조(기후영향・취약성・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・연구・개발 등)	×	·미첨부 3호 –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기후영향·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・연구・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영향・취약성 평가 관련 업무의 범위·대상 및 방법 등의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라 확대될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·내용·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– 참고로,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2026년 기준 「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연구사업」 예산 5억 7,100만원을 편성하여 기후변화 영향·취약성 평가도구 고도화 사업, 기후위험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임
16	안 제24조(전문인력의 양성)	×	·미첨부 3호 – 제정안에 따라 기후영향·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 험 평가 등 적응역량 및 기후회복력 제고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·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사업비 지원 등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·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– 참고로,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「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」 사업을 통해 17개 분야 53개 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			학을 대상으로 기후변화, 탄소중립 등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실시 중이며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244억 7,900만원임
17	안 제26조(재정지원 등)	×	·미첨부 3호 – 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학술조사·연구·기술 개발·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·범위·수준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본 추계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·보급 및 기후위기 적응성과·진척도 점검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❑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 따라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에는 4억원, 기후위기 적응성과·진척도 점검 및 평가에는 2년마다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
○ **(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 관련 유사사례)**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 따라, 본 추계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 관련 유사사례로 '기후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적응주체별 기후위험평가 방법 연구' 사례를 준용함

---

1)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제37조(기후위기의 감시·예측 등)
②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·관리·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·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산업계·연구계·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[표 2]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 관련 유사사례 주요내용

(단위: 백만원)

과제명	수행기관	수행기간	계약금액	주요내용
기후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적응주체별 기후위험평가 방법 연구	한국환경연구원, (주) 어스	2023. 8.~ 2024.8.	400	·SSP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기후위험지도 구축 방법 연구 ·기후위기 적응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·산업단지 기후위험평가 방법 개발 및 대응 방안 연구 ·공공서비스 기후위험평가를 위한 기반 연구 ·기후위험도 평가기법 마련 및 시범평가 지원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○ **(기후위기 적응성과·진척도 점검 및 평가 관련 유사사례)**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 따라, 본 추계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성과·진척도 점검 및 평가 관련 유사사례로 「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 및 모니터링 지원 사업」 사례를 준용함

[표 3] **기후위기 적응성과·진척도 점검 및 평가** 관련 유사사례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내역사업	2024	2025	2026
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(6331-301)	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(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 및 모니터링 지원 사업)	250	250	200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○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추계 첫 해인 2028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며, 기후위기 적응성과·진척도의 점검·평가는 각각 2030과 2032년에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

❑ 추계 결과,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지표를 개발·보급하고, 기후위기 적응성과·진척도를 점검·평가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8억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·보급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·보급	400	—	—	—	—	400
기후위기 적응성과·진척도 점검·평가	—	—	200	—	200	400
합계	400	—	200	—	200	800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Ⅳ. 부대의견

❑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, 향후 기후위기 적응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 및 기후위기 적응성과·진척도의 점검 및 평가의 방법,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